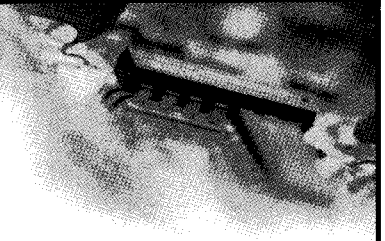


# 한-인도 CEPA와 전자산업



한국과 인도는 8월 7일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을 체결했다. 신흥 경제국인 브릭스(BRICs)국가와 체결한 첫 자유무역협정(FTA)이라 할 수 있다.

### 【한-인도간 교역 추이】

(억불)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수출	13.8	28.5	36.3	45.5	55.3	66.0	89.8
수입	12.5	12.3	18.5	23.1	36.4	46.2	65.8
무역수지	1.4	16.2	17.8	22.4	18.9	19.8	24.0
교역액	26.3	40.9	54.8	68.6	91.7	112.2	155.6

### 【우리의 대인도 투자현황】

(백만불, 건)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누계 ('68-'08)
신고	금액	43.0	21.2	48.9	112.7	150.3	327.7	2,160.9
	건수	16	27	56	75	152	204	956
투자	금액	45.4	16.9	40.8	91.1	98.5	291.2	1,493.3
	건수	45	40	82	116	224	324	1,469

\* 출처 :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현황 통계

☆ 인도는 한국의 13번째 투자대상국

### 전자산업은 수출선 다변화 계기

한국과 인도의 이번 협정 체결은 미국, EU 등 선진시장이 급격한 소비위축을 겪고 있는 가운데, 성장하는 인도 시장으로의 수출선 다변화 계기가 될 것이다.

CEPA 발효시 특히, 전자의료기기, 충전기기(초고압 GIS, 변압기, 배전자동화기기) 등을 중심으로 수출 증가가 기대된다. 아울러, 현지 투자여건 개선으로 현지 공장(삼성, LG) 생산 확대시, 디스플레이 패널, TV 부품 등 수출도 증가할 전망이다.

다만, 對인도 수출 상위 품목 상당수가 이미 무관세거나 중장기유예·양허제외로 분류되어 있어, 수출 확대 효과는 제한적이다. 휴대폰·반도체 등은 이미 무관세화되었으며, TV, 냉장고, 전동기 등(관세:12.5%) 우리측 수출 주력품목은 민감품목(8년내 50%감축) 또는 양허 제외로 분류된다.

### 인도는 세계 4위의 구매력

외교통상부는 세계 인구 6분의 1 시장이 우리에게 열린다. 인도는 세계 4위의 구매력을 자랑하며 최근 지속적으로 연 성장 8%를 기록하고 있다. 앞으로 5~10년 뒤 인도는 오늘과 또다른 엄청난 모습을 보일 것이다.

**【한국의 대인도 10대 수출품목】**

(단위 : 천달러, %)

순위	MTI	품목명	2007년		2008년	
			금액	비중(%)	금액	비중(%)
1	7420	자동차부품	879,447	13.3	1,312,060	14.6
2	1336	윤활유	311,708	4.7	475,356	5.3
3	6132	열연강판	278,725	4.2	359,366	4.0
4	2140	합성수지	226,437	3.4	360,366	4.0
5	8121	무선전화기	205,028	3.1	498,677	5.6
6	7461	선박	191,506	2.9	563,705	6.3
7	6133	냉연강판	189,587	2.9	278,197	3.1
8	1332	경유	180,162	2.7	281,182	2.8
9	8128	무선통신기기부품	160,372	2.4	273,221	3.0
10	2190	기타석유화학제품	151,972	2.3	167,734	1.9
		소계	2,774,944	41.9	4,569,864	50.6

**【한-인도 CEPA의 경제적 효과】**

구분	CEPA 체결의 효과	
국내총생산(GDP)	0.03%~0.17%	
대인도 교역 (10년간 연평균 규모, 제조업부 문)	수출증가	177백만불
	수입증가	37백만불
	무역수지 증감	140백만불

\* 자료 : GDP 효과(KIEP, 2004.8월), 수출입 효과(KIET, 2008.10월)

이번 협정은 이런 의미에서 양국간의 경제 관계를 더욱 강화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우리나라와 인도는 19세기 중엽부터 20세기 중엽에 나라를 강점당한 시절이 있다는 공통점도 있다. 그러나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발전시키고 있으며 이번 협정으로 양국 관계가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기대한다.

인도는 중국, 러시아, 브라질과 함께 브릭스라 불리는 신흥시장으로 세계 인구 2위, 미국과 중국 일본에 이어 4위의 시장을 가지고 있다. 우리에게도 브릭스 국가와의 첫 자유무역협정(FTA)이고 인도는 경제협력개발기

구(OECD)와 처음 맺는 것이어서 양국의 보완 관계가 크다, 그 어떤 FTA보다 윈윈의 효과가 클 것이다. 양국이 이번 협정의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조속한 발효가 필요하며 국회 비준을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한국과 인도 파트너십 공고**

인도 통상부는 이번 협정은 인도로서는 주요 경제국과 맺는 첫 협정이어서 인도에 큰 의미가 있다. 앞으로 상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파트너십이 공고해질 것이다. 인도는 한국의 창의, 혁신에 대한 역량에 대해 존경의 마음을 가져 왔다. 한국 경제는 인도 경제 성장의 모델로 자주 언급돼 왔다. 역사적으로도 한국은 1945년 독립하고 인도는 1947년 독립한 역사적 유대 관계가 있다. 8월15일이 양국의 독립기념일이라는 사실은 우연이 아닐 것이다.

인도의 노동시장, 산업구조, 지식기반 산업이 한국의 하드웨어 제조업 등과 어우러져 한층 더 효과를 낼 것이다. 이번 CEPA 협정은 인도가 주요 경제국과 체결하는 첫번째 협정이다. 또 인도는 경제 성장률이 9%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도 경제의 탄탄한 기초 체력과 인도로 유입되는 활발한 투자, 두터운 젊은 소비자층, 전 세계 어린이 30%가 인도인 사실 등은 인도의 경제 성장과 동력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번 협정은 전 세계에 보호주의를 막고 자유주의를 수호하자는 메시지도 전달할 것이다.

한국을 선택한 이유는 한국이 가진 성장성과 상호 보완적인 경제 잠재력을 고려했다. 또 한국 정부와 한국 산업계가 그동안 인도에 보여준 노력과 투자 증대의 결실이다. 자동차, 전자 부분 등 이미 많은 한국 기업이 인도에 진출해 있고 한국의 엔지니어 등 고급 인력이 인도 경제성장에 기여하고 있어 한국을 선택했다. 또 양국 경제가 가지고 있는 깊은 상호 보완성을 감안했다. 인도의 숙련공, 반숙련공은 비용 효율적인 면에서 인력 활용이 용이하다. 양국 교역 규모는 현재 약 150억달러 수준인데 향후 10년내 2배 이상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국회 통과시 협정 발효**

협상경과를 보면, 양측은 '06.2월에 협상을 개시한

이후 2년 7개월간, 공식협상 12회, 회기간협상 2회를 통해 이견을 좁혀 '08.9.25일 사실상 타결되었다. 양국 정부간 서명('09.8.7)함에 따라 '10.1.1 발효를 추진한다. 인도는 내각승인('09.7.2)을 통해 CEPA 협정발효를 위한 국내절차 완료되었고, 우리의 경우 국회 비준만 남겨두고 있어 국회 통과시 협정발효가 가능하다.

우리나라는 인도의 13번째 FTA 체결국으로, 인도는 SARRC(남아시아지역 공동연합), MERCOSUR(남미 공동시장), 네팔, 몰디브, 미얀마, 방글라데시, 부탄, 세르비아몬테네그로, 스리랑카, 싱가포르, 아프가니스탄, 칠레와 FTA 체결했다.

주요 협상결과는 상품양허에서 상호 보완적인 산업 구조를 고려한 상품양허안에 합의했다. 우리측은 인도 시장 개방에 초점을 두고 협상을 진행, 인도가 기존 체결한 FTA중 최대 개방 수준으로 합의했다.

**상품양허안 전기전자교역조건 개선**

공산품에서 우리측은 전기전자·기계·철강·자동차 부품 등에서, 인도측은 화학·섬유·기계 등에서 교역조건이 개선될 것으로 평가한다. 원산지는 기계·전자·섬

**【한국의 대인도 10대 수입품목】**

(단위 : 천달러, %)

순위	MTI	품목명	2007년		2008년	
			금액	비중(%)	금액	비중(%)
1	1334	나프타	2,502,019	54.1	3,889,483	59.1
2	1190	기타금속광물	233,280	5.0	233,280	3.5
3	0135	박류	206,679	4.5	345,842	5.3
4	4213	면사	199,350	4.3	208,325	3.2
5	6181	합금철	128,747	2.8	261,885	4.0
6	1120	철광	128,188	2.8	91,600	1.4
7	2110	기초유분	102,837	2.2	140,551	2.1
8	2289	기타정밀화학원료	82,205	1.8	119,735	1.8
9	1160	아연광	61,097	1.3	22,217	0.3
10	2262	의약품	54,984	1.2	59,770	0.9
		소계	3,699,386	80.0	5,372,688	81.6

유·자동차 등 대부분의 품목에서 충족 가능한 원산지안에 합의하여 특혜관세의 혜택 확대가 가능하다.

투자는 인도 내에서 투자자유화를 대폭 증진하고, 한미 FTA 수준의 투자자 보호가 확보된다. 설립전단계의 투자에 대해서도 내국민대우를 부여(Pre-NTI)한다. 서비스는 IT 등 엔지니어링 직종의 서비스 인력개방을 추진하되, 출입국 관련 안전장치를 마련한다. 무역구제는 한-인도 CEPA 체결로 반덤핑조치 발동절차의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발동가능성이 제약된다.

### 관세완전철폐 한국 84.7%, 인도 74.6%

분야별로 보면, 양측은 상호 보완적인 산업구조를 고려한 상품양허안에 합의했다. 관세완전철폐(2017.1.1까지) 비중은 우리는 84.7%, 인도는 74.6%, 관세가 50% 이상 줄어드는 비중은 우리측 89.7%, 인도는 85.5%이다. 우리측의 가장 민감품목인 섬유(면사)의 경우, FTA 협상 최초로 양허제외 확보(전체 수입액 기준 : 7.8%)했다. 우리측은 제조업 경쟁력, 무역흑자 등을 감안, 차등적 양허 수준에 합의했다.

협상발효 2년후 이행과정에서 Review협상을 통해 재협의를 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미진한 품목의 양허를 추

가 논의가 가능하다. 싱가포르의 경우 인도와 인도-싱가포르 CECA 발효이후 재협의(review)를 통해 인도측이 싱가포르에 275개 품목을 추가 양허했다. ('07.12월) 싱가포르의 경우 발효('05.8월)시 양허한 품목이 품목수 기준 43.8%에 불과했다.

### 원산지 역내부가가치를 충족 수준

원산지에 있어서는, 기계, 전기전자, 섬유, 자동차 등에서 국내업체가 역내부가가치를 충족할 수 있는 수준(35~40%)으로 합의했다. 다만, 철강 및 비철 등 일부 품목의 경우(전체 수출액의 0.5%) 원산지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우므로 생산여건 개선이 필요하다.

미소기준 적용에 합의하여, 우리 기업이 품목별 원산지기준과는 별도로 소량의 비원산지 재료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다. 미소기준이란 비원산지재료가 최종재 부가가치의 10%를 넘지 않는 경우, 세번변경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예외적으로 원산지로 인정하는 제도이다.

### 미소기준 적용, 최종재 부가가치 10%내에서

중간재 조항 관련, 인정근거는 협정문상에 일부 반영되었으나, 발효후 관세위원회를 구성하여 2년간 명확

## 【업종별 상품양허 현황】

(총 수입액대비 %비중)

국 가	양 허	전기 전자	기계	자동차 조선	화학	철강	비철	섬유	생활용품	에너지 자원	기타
인도	즉시, 5·8년	39.6%	9.6%	5.8%	6.1%	7.6%	2.8%	0.5%	2.1%	0.4%	0.1%
	관세인하	1.5%	2.1%	4.9%	1.1%	1.1%	-	-	0.1%	-	-
	양허제외	2.0%	2.1%	2.1%	4.7%	1.0%	0.1%	2.2%	0.3%	-	-
	전체	43.1%	13.8%	12.8%	11.9%	9.7%	2.9%	2.7%	2.5%	0.4%	0.1%
한국	즉시, 5·8년	2.0%	2.5%	1.2%	9.1%	10.4%	2.2%	3.4%	3.0%	40.1%	-
	관세인하	-	-	-	-	-	-	3.2%	-	0.2%	-
	양허제외	-	-	-	-	-	-	7.8%	-	0.1%	-
	전체	2.0%	2.5%	1.2%	9.1%	10.4%	2.2%	14.4%	3.0%	40.4%	-

화를 위한 협의진행 예정이다. 중간재 조항이란 비원산지 재료를 사용한 중간재가 원산지 기준을 충족할 경우, 중간재 전체를 국내산으로 인정하여 최종제품의 역내부가가치 산정시 그 중간재 전체의 가치를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이다.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은 기관발급으로 관세청, 대한상에서 발급된다.

투자의 경우, 투자시장 개방에서 투자의 전 단계에 걸쳐 상대국 투자자에 대한 내국민대우(NT)를 보장하였고, negative 방식의 투자 자유화를 통해 높은 수준의 시장 개방을 달성한다. 네거티브방식이란 개방을 허용하지 않은 분야만 기술하고 그 외의 모든 분야에서 원칙적으로 외국인 투자를 허용하는 방식으로, 한-인도 CEPA는 인도가 negative 방식을 수용한 최초의 사례이다.

### 전자, 인도측 투자시장 개방 확보

우리의 주된 관심 품목인 자동차, 전자, 금속 등 대부분의 제조업 분야에 대한 인도측의 투자시장 개방을 확보했다. 단, 냉장고·에어컨의 경우는 인도 정부의 부분적 규제가 가능하며, 일부 식료품, 목재/시멘트의 제조업에 대해서도 인도측은 규제 권한을 유보한다.

한편 유통업의 경우, 인도측은 도매서비스는 개방한 반면 소매서비스는 단일브랜드 소매업에 한해 부분적으로 개방(외국인투자를 51%까지 허용)한다. 한편 우리측은 시장개방을 원칙으로 하되, 공익·안보상 민감한 분야에 대한 규제 권한을 확보한다. 공공질서 유지를 위한 규제 조치 권한을 포괄적으로 확보하였으며, 방위 산업·원자력·에너지(전력, 천연가스)·문화/출판(신문, 영화) 등에 대한 정부 규제 권한을 명시했다.

### 투자보호, 수용조치제한 등 다양한 장치

투자보호 개선에서 투자유치국의 자의적인 조치로부터 상대국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수용조치 제한, 이행요건 금지, ISD조항 등 다양한 투자보호장치를 마련했다. 직접수용 뿐만 아니라 간접수용에 대한 제한 및 보상 의무도 규정하여, 우리 투자자 재산권의 안정성을 확보했다. 재산권의 직접적 박탈 조치(직접수용)는 물론이고, 소유권의 명시적 이전이 없는 경우에도 그에 준하는 침해 조치(간접수용)로 판단된다면, 투자자에 대한 보상 의무가 생긴다.

국산물품 사용 의무, 기술이전 의무 등의 각종 이행 의무 부과를 금지하여, 투자자의 투자 관련 자유로운 의사결정권을 보장한다. 투자유치국의 투자협정상 의무 불이행으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투자자-국가간 소송제도(ISD)를 규정한다. ISD 제도는 인도 정부의 협정 준수를 촉구할 뿐만 아니라, 외국인투자제도의 선진화도 유도하여 우리 진출기업의 투자 환경을 개선시킬 것이다.

### 거대 신흥시장 선점

한국과 인도의 CEPA 타결은 11억 인구의 거대 신흥시장을 조기에 선점, 수출확대를 통한 경제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중국, 일본 등 경쟁국에 앞서 거대 신흥시장을 선점한다.

인도는 11.5억 인구(세계2위), GDP 12,097억불('08년, 구매력기준GDP 32,883억\$ 세계4위), 연간 6%(GDP대비) 이상의 급속한 성장을 이루고 있는 상황이다. 인도의 수입시장 성장률은 2003년 이후 매년 20%(수입액 기준) 이상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인도의 對세계 수입액(억불)은 ('05)1,384 → ('06)1,729 → ('07)2,175 → ('08)2,928이다. 인도 수입시장 내 우리나라 비중(%)은 ('05) 3.0, ('06) 2.7, ('07) 2.5, ('08) 2.8이다. 특히, 중산층 소비자를 중심으로 거대 잠재



소비시장으로 부상중이다. 중산층은 [現] 50백만명 → [2025년] 583백만명 증가가 예상('07.5월 Mckinsey)된다.

### 현지시장에서 경쟁우위 확보

인도의 FTA 체결 확대에 따른 현지 경쟁심화에 선제적 대응이라 할 수 있다. 인도는 아세안과 '08.8월 FTA를 타결하였으며, 현재 일본·EU 등과 FTA 협상을 진행중인 바, 우리가 협상을 먼저 타결함으로써 현지시장에서 경쟁우위 확보가 기대된다.

상호보완적인 경제구조로 높은 교역증진 효과가 기대된다. 한국은 전자·기계·수송장비·철강·석유화학제품을, 인도는 섬유·석유제품·농산물 등을 수출하는 전형적인 상호보완적 산업구조이다. 이에 따라 제조업 분야에서는 우리측에 민감한 품목은 거의 없는 반면, 대부분 업종에서 우리의 수출증가가 기대된다.

한-인도 양국간 경제·통상 분야에서 보다 긴밀한

협력관계가 구축된다. 인도는 국제사회에서 개도국의 이해를 반영하는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서남아시아 경제허브로서의 전략적 가치를 지닌 국가로 우리나라 경제외교의 외연(外延)을 확대하기 위한 전략적 제휴관계 구축이 필요한 것이다.

### 국내 총생산 0.17% 증가

이번 협정의 거시경제적 효과로 한-인도 CEPA 체결 시 국내 총생산은 0.03%~0.17%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조업 수출은 향후 10년간 연평균 3.9%(1,77억불), 수입은 1.6%(0.4억불) 증대, 대인도 무역수지는 연평균 1.4억불 개선이 전망된다.

산업별 수출입 효과로는 공산품에서 업종별로 수출은 기계, 자동차, 화학, 전기전자 순으로, 수입은 화학, 섬유, 기계 순으로 증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他 FTA에 비해 관세양허 기간이 길어 효과는 장기적으로 서서히 실현될 전망이다.

【한-인도 CEPA의 업종별 수출입 증대효과】

(백만 불, %)

업종	수출증가			수입증가			무역수지	
	연평균		10년 누계	연평균		10년 누계	연평균	10년 누계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기계	42	6.3	419	4	5.7	37	38	382
자동차	30	6.1	297	2	7.3	19	28	277
화학	23	5.3	233	8	4.0	75	16	158
전기전자	16	1.0	160	2	4.0	18	14	142
철강	11	2.1	114	2	0.9	18	10	96
섬유	3	2.1	29	6	1.9	55	△3	△26
생활용품	2	5.9	19	1	4.7	13	1	6
기타제조업	50	6.4	503	14	1.0	136	37	367
제조업총계	177	3.9	1,774	39	1.6	371	140	1,401

\* 자료 : KIET, 2008.10월

**산업별 수출입  
효과**

공산품에서 업종별로 수출은 기계, 자동차, 화학, 전기전자 순으로, 수입은 화학, 섬유, 기계 순으로 증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他 FTA에 비해 관세양허 기간이 길어 효과는 장기적으로 서서히 실현될 전망이다.

업종별 기대효과로는, 對인도 수출의 75% 이상에 대해 8년내 관세가 철폐되며, 주요 원자재의 수입관세도 철폐되어 산업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업종별 산업계에 큰 도움**

기계업종에서는 평균 12%에 달하는 인도측 기계품목 수입관세의 철폐, 한국제품 인지도 향상 등으로 對인도 수출증가가 기대된다. 인도는 전반적으로 기계품목의 관세율이 높으며, 고속성장 과정에서 기계 등 설비투자 수요가 높아 FTA 체결시 건설기계(관세율 7.5%), 공작기계(7.5%) 등 주력 수출품목을 중심으로 수출확대 및 기관차(10%, 5년철폐), 엘리베이터(12.5%, 5년철폐) 등의 신규 수출도 기대된다.

사출기계·머시닝센터 등 공작기계 즉시철폐, 주형 및 공작기계 부품 5년철폐, 천공기계 등 건설기계 8년 철폐로 다수 주력품목이 완전철폐 품목이다. 아울러, 현지 생산체제를 구축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의 투자환경 개선으로 국내 기계업계의 간접적 수출증대효과도 기대된다.

**자동차 현지생산체제 강화**

자동차의 경우, 완성차는 양허제외 되었으나, 자동차 부품 수출이 용이해지면서 기구축된 현지 생산체제를

강화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차는 인도 첸나이에 연간 60만대 규모의 생산시설을 운영중이다.

현지 우리자동차 생산에 사용될 핵심 자동차 부품(관세율 10%) 26품목에 대해 관세철폐에 합의, 현지 생산 차량의 가격경쟁력이 제고된다. 플라이휠, 액체펌프 등 19개 품목은 8년내 관세를 완전철폐, 디젤엔진, 기어박스 등 7개 품목은 8년간 5%로 관세를 인하한다. 다만, 많은 품목이 중장기 철폐로 분류되어, FTA 효과가 완전히 실현되는 데에는 다소간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철강 10% 관세 철폐**

철강업종에서, 평균 10%의 철강제품 관세가 철폐되고 무역구제 협력이 강화되면 현지 내수시장으로의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력 수출품목이 5~8년내 관세철폐되어, 상대적으로 큰 효과가 기대된다.

특히 주력품목인 냉연·열연강관은 협정체결후 인도가 관세를 인상한 품목으로, 일본 등 경쟁국 대비 특히 큰 효과가 기대된다. 냉연·열연강관은 '06년 관세율인 5%를 기준으로 협정을 체결하였으나, 인도측은 '07년 이후 관세율을 10%로 인상했다.

한편, 포스코의 현지 제철소 건립이 완성되면, 현지로부터 저부가 원자재를 공급받아 고부가 강재를 재수출하는 형태의 교역확대도 기대된다. POSCO는 인도

에 12백만톤 규모 일관제철소 건설을 추진('15년 4백만톤 완공 목표)중이다. 인도로부터는 페로실리코망간 등 제철원료를 수입하고 있어, 국내 수급불안정 해소에도 다소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섬유는 對인도 수출은 인조단섬유직물, 편직물 등을 중심으로, 수입은 면사를 중심으로 한-인도 섬유교역 규모 증대 예상면사 관세(8%) 인하로 수출시장에서 면제품의 가격경쟁력 강화가 기대된다.

### 면사, FTA 체결 처음으로 양허제외 품목 확보

'08년 면사 수입량은 202천톤이며, 이중 對인도 면사 수입은 72천톤으로 전체 면사 수입량의 약 36% 차지한다. 아울러, 면사 중 특히 민감한 품목에 대해 FTA 체결사상 처음으로 양허제외 품목(전체 공산품 대인도 수

입액의 8.5%)으로 확보했다.

한편, 급속히 성장하는 인도 시장 진출 및 인도의 풍부한 자원을 활용한 섬유생산기지 건설 등 섬유부문 투자 활성화 기반을 마련했다. '09년 현재 對인도 섬유투자액은 1.3천만불로, 중국(17.3억불), 베트남(6.2억불)에 비해 미미한 편이다.

비철금속의 경우, 인도측 관세율이 5~10%로 비교적 높으며, 거대 잠재시장인 인도 신시장 개척 및 다변화로 지속적인 수출 증대 효과가 기대된다. 인도로의 수출이 많고 관세율이 비교적 높은 동(동판·동관)·알루미늄(샤시) 제품(5~10%)을 중심으로 대인도 수출확대가 기대된다.

### 비철 대일 대중 편중을 완화

한편, 대내적으로는 수입의 對日·對中 편중을 완화

분류	수출 (천US\$)	수입 (천US\$)	주요 수출증대 품목 (인도측 양허현황)	주요 수입증대 품목 (한국측 양허현황)
자동차(부품포함)	1,360,110	105,093	기타 부품(12.5%, 5%로감축), 기어박스(12.5%, 50%감축), 디젤엔진(12.5%, 5%로감축)	기타 부품(8%, 즉시 ~ 5년철폐), 트랙터(8%, 즉시철폐)
기계	1,343,481	121,301	프레스·압출기(12.5%, 즉시철폐), 그 부품(12.5%, 즉시철폐) 엑스캐베이터(12.5%, 8년철폐), 보일러 부품(12.5%, 8년철폐), 펀칭공구(12.5%, 5년철폐), 냉장고용 액체펌프(12.5%, 8년철폐)	디젤엔진 부품(8%, 5년철폐), 밸브(기타)(8%, 5년철폐)
철강	1,427,234	579,775	열연·냉연강판(5%, 5~8년 철폐) 철강구조물(12.5%, 5년철폐), 파이프(12.5%, 8년철폐)	페로크롬(3%, 즉시철폐), 페로실리코망간(5%, 5년철폐)
섬유	143,373	261,289	탄성사함유 직물(12.5%, 8년철폐), 폴리에스테르제 직물(12.5%, 5년철폐)	일부 면사(8%, 50%감축)
전기전자	1,534,694	137,141	전화기 부품(0%, 즉시철폐), TV(12.5%, 50%감축), TV 부품(12.5%, 즉시철폐)	대용량교류발전기(0%, 즉시철폐), 탄소전극(노용)(0%, 즉시철폐), IC(기타)(0%, 즉시철폐)
비철금속	200,497	35,878	몰리브덴정광(2%, 5년철폐), 알루미늄박(7.5%, 5년철폐), 아연괴(5%, 5년철폐)	아연광, 동광 등 (0%, 즉시철폐)
석유화학	784,924	181,619	역청유(10%, 50%감축) 스티렌-부타디엔 고무 (12.5%, 5년철폐), 에틸렌-초산비닐 공중합체 (12.5%, 5년철폐)	나프타(0%, 즉시철폐)
정밀화학	327,008	284,065	인산암모늄(5%, 8년철폐)	안료색소(8%, 5년철폐)
선박	580,216	755	유조선(12.5%, 8년철폐), 기타 화물선(12.5%, 8년철폐)	





하여 원료수급 안정 효과도 기대된다. 국내 자급도가 낮은 동 및 알루미늄 스크랩, 비철금속과 등 원료 조달의 원활화를 통한 수급 불균형 해소가 기대된다.

한국과 인도의 CEPA 활용전략으로는, 먼저 인도시장으로 수출과 투자의 촉진 지원하는 것이다. FTA 유망품목을 중심으로 현지 마케팅 활동을 확대하고, 한국기업의 인도 투자진출 여건을 개선한다.

부품 아웃소싱 시장, 기계·플랜트 등 전략품목 공략을 가속화한다. 자동차, 전자, 기계 부품 등 FTA 수혜 품목을 중심으로 구매전략 상담회 개최 등 성장하는 인도의 부품 아웃소싱 시장공략을 가속화한다.

### 인도시장의 수출과 투자 지원

3G 이동통신 수출상담회 개최('10년), 맞춤형 구매전략 상담회 개최('10.3월), 기계·자동차부품 등 기계류 전시회 참가지원 등을 들 수 있다. 인도정부의 전력, 도로, 항만 등 인프라 부문 투자확대를 활용, 기계류 및 플랜트 수출 활성화를 지원한다. 전력/전기기기 파트너쉽 행사('09.9월), 원자력 플랜트기자재 로드쇼 참가지원('09.12월) 등이다.

인도 투자진출 활동을 지원한다. 「뉴델리 한국투자

기업지원센터」를 개소('09.3.16)하여 투자상담, 경영환경 정보제공 등 한국기업의 애로사항을 종합 해결(KOTRA)한다.

인도 현지 사무공간을 제공하는 「수출인큐베이터 사업」을 강화(KOTRA)한다. 인도수출유망기업 현지사무소 지원 및 투자진출조사기업 사무공간을 단기대여한다.

### 한국기업전용 산업단지 조성

토지공사에서 한국기업전용 산업단지 조성(구자라트, 300만평)을 예정하고 있어 현지 기업진출을 지원한다. 공단 조성 및 건설(10~11년), 임대 및 개별기업 입주(11년~12년)이다.

인도의 수입규제 조치에 적극적으로 대처한다. 「무역규제 Help Desk」를 신설하여, 우리기업들이 인도의 수입규제에 적시 대응할 수 있는 지원시스템을 구축('10.3월, 뉴델리, KOTRA)한다.

현지 변호사를 활용하여 반덤핑관세 부과에 대한 행정적, 절차적 투명성 감시, 법적대응방향 조언, BIS인증 및 수입라이선스 취득 지원 등 지원한다. 재인도 한국경제인연합회(뉴델리)를 통해 우리기업의 피해상황 상시접수 및 조치방향을 제시한다.

### 산업기술 협력 활성화

한국과 인도의 산업기술 협력을 확대한다. 한-인도간 산업기술협력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한편, 고급 기술인력 도입 확대를 지원한다. 한-인도간 산업·기술협력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한다. 한-인도 투자촉진협의회(韓 지경부차관, 印 상공부차관) 등 양자 협력채널을 활성화하여 표준공조, 무역구제기관 간 협력 등 사업을 추진한다. 제1차회의('03.10월, 서울), 제2차회의('05.12월, 인도), 제3차회의('09.9월, 서울)이다.

한-인도 경제공동위(韓 외교부장관, 印 외교부장관)를 활용, 투자·에너지·산업 등 양국간 당면과제를 논의하여 경제협력을 증진한다. 제5차회의('07.9월, 서울)가 최근 마지막 회의로 향후 개최될 예정이다.

한-인도 산업기술협력 유망분야로 IT에서, 인도 IT 산업은 '97년 이후 연 평균 27%의 고성장 증으로, 소프트웨어 및 IT 관련 서비스가 인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8년 5.5%이다. BT에서, 인도 BT 산업 매출은 '07년 전년 대비 31% 성장하는 등 급성장중이며, 매년 70만 명의 석사 및 1,500명의 박사급 전문 인력이 배출된다.

#### 인도 고급기술인력 국내 유치

인도 고급 기술인력의 국내 유치를 확대한다. 골드카드제도를 활용, 인도의 고급기술인력 유치를 통해 국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활성화한다. 인도측 기술자 골

드카드 추천실적('00~'08년)은 IT 분야 706명, 기타 407명이다. (전체 3,232명의 34.4%)

인도 전문인력 유치로드쇼 등을 개최하여 IT·BT 등 신기술 분야의 인도 우수 기술인력 유치활동을 전개한다. Contact Korea 사업('09~10년), 뉴델리 점보 잡페어 참가지원(10.5월) 등이다.

이번 협정의 피해 및 활용기업의 지원에서는, 무역조정지원제도를 통해 피해기업의 경영구조 개선 지원과 FTA 활용을 위해 경쟁력이 저하된 업종에 대해 사업전환 지원이다.

「무역조정지원제도」운영 및 보완이다. FTA 이행으로 인한 수입 증가로 피해를 입거나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은 기업의 경영개선 및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지원한다.

#### 사업전환지원제도의 확대 운영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무역조정지원에 관한 법률('07.4월 시행, '07.12월 개정)과 '09년 무역조정지원 관련 예산상황은 상담지원에 10억원(지정부), 용자지원에 300억원(중기청)이다.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절차 간소화 등 제도개선을 통해 무역조정지원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한다. 무역조정지원법 개정(09.4.22 공포), 입법예고(09.7.29~8.17), 시행('09.10.23) 등이다.

「사업전환지원제도」의 확대 운영이다. 경쟁력이 저하된 업종·품목에 대해 새로운 업종·품목의 사업에 진출하는 중소기업의 사업전환을 지원한다. 사업전환지원 용자자금은 (08) 1,100억원 → (09) 1,175억원이다. FTA 원산지 교육프로그램 확대이다. 주요 FTA 원산지 증명 사례별 원산지 실무 매뉴얼을 작성('09.8월), 무역협회 등에서 원산지증명 교육 프로그램의 확대를 추진한다.

